

- ➡ 아래의 각 섹션에서는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침을 알려줍니다.
- ➡본명 증빙 및 보험 증빙에 관한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등록증의 이름과 일치하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별표(*)가 표시된 양식은 모든 차량 관리 사무소(Motor Vehicles office) 및 dmv.ny.go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세 양식은 뉴욕주 세무재정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뉴욕주에서 차량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갖추고 DMV 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전히 작성한 차량 등록증/소유증 신청서(양식 MV-82*). 2. 소유권 증명(3페이지 참조).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동업 관계 또는 공동 소유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양식 MV-83T*). 3. 등록자의 명의로 된 뉴욕주 보험 카드(3페이지 참조). 4. 검사 증명(4페이지 참조). 5. 판매세 완납 또는 완전히 작성한 판매세 양식(4페이지 참조). 6. 신원 증명 - 최근 사진 부착 뉴욕주 운전면허증, 운전연습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 또는 양식 ID-82*참조(등록 및 소유권 획득을 위한 신원 증명). 7. 회사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법인 증명(4페이지 참조). 8. 동업 관계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동업 관계 증명(4페이지 참조). 9. 2인이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반드시 각각 섹션 1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섹션 6의 양식 MV-82*에 서명한 뒤 신원 증명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10. 차량 소유주가 등록자와 다른 경우, 소유주는 반드시 섹션 3의 양식 MV-82*을 완전히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소유주는 반드시 소유주의 성명 및 출생일에 대해 적절한 증명 서류(상단의 6번 참조) 및 해당 차량의 인정되는 소유권 증명 서류(3페이지 참조)를 제출해야 합니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차량이 2011년식 또는 그 이후의 모델이고 해당 차량이 제조된 해로부터 20년 이내에 양도되었을 경우 주행기록계 공개 설명서.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양도된 2011년식 차량에는 주행기록계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2018년부터 2037년까지 양도된 2018년식 차량에는 주행기록계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 증명에 주행기록계 공개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소유주 및 판매자가 반드시 양식 MV-103*의 주행기록계 공개 설명서 섹션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12. 소유권 증명이 뉴욕주에 속하는 8년 이내의 차량은 손상 공개 설명서를 제출하십시오. 만약 소유권 증명에 손상 공개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소유주 및 판매자가 반드시 양식 MV-103*의 손상 공개 설명서 섹션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13. 매도 증서(4페이지 참조, 판매세 완납 증명). 14. 개인, 동업 관계 또는 회사가 다른 개인에게 차량을 구매하거나, 매도하거나 등록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발부한 경우, 위임장 원본(4페이지 참조, 위임장). 15. 지불. 수수료는 현금, 수표, 우편환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신용카드 소유주가 반드시 거래에 참석해야 합니다. |
|---|---|

교체하기 등록 번호판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교체하는 경우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전히 작성한 차량 등록증/소유증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양식 MV-82*). 2. 번호판 하나를 분실한 경우 남은 번호판을 가져오십시오. 3. 차량의 등록증 또는 번호판이 범죄로 인해 분실된 경우, “자동차 물품의 분실, 도난 또는 몰수 보고”(양식 MV-78B)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경찰 기관에서 발부한 문서를 제출해 등록증 또는 번호판을 무료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신원 증명 제출(상단의 6번 참조). 5.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려면 등록자의 명의로 된 뉴욕주 보험 카드를 제출하십시오(3페이지 참조, 보험 보장 증명). 6. 요금을 지불하십시오(상단의 15번 참조). |
|---|---|

변경하기 등록 또는 소유권 서류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전히 작성한 차량 등록증/소유증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양식 MV-82*). 2. 1973년 또는 그 이후의 차량은 소유권 증서를 제출하십시오(양식 MV-999). 3. 등록자 또는 소유주의 신원 증명을 제출하십시오(상단의 “등록하기” 아래 6번 참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성명, 동업 관계, 차량 연식, 차대번호(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등록 등급 변경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이 필요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필요한 경우 검사 증명(4페이지 참조) b. 변경 증명 c. 보험 증명 5. 요금을 지불하십시오(상단의 “등록하기” 아래 15번 참조). |
|---|--|

갱신하기 차량의 등록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1. 완전히 작성한 차량 등록증 갱신 권유서(양식 MV-3 또는 OP-3). 양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양식의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차량 등록증/소유증 신청서”(양식 MV-82*) 및 신원 증명(1 페이지의 “등록하기” 아래 6번 참조)을 작성해 제출하십시오.
2. 신원 증명 - 최근 사진 부착 뉴욕주 운전면허증, 운전연습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 또는 양식 ID-82* 참조(등록 및 소유권 획득을 위한 신원 증명).
3. 뉴욕주 보험 카드(3페이지 참조).
4. 필요한 경우 검사 증명(4페이지 참조).
5. 요금 지불(1 페이지의 “등록하기” 아래 15번 참조).

번호판 이전하기 번호판을 다른 차량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완전히 작성한 차량 등록증/소유증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양식 MV-82*).
2. 소유권 증명을 제출하십시오(3페이지 참조, 인정되는 증명 서류).
3. 등록자 명의의 현재 뉴욕주 보험 카드를 제출하십시오. 카드는 반드시 번호판이 이전될 차량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3페이지 참조).
4. 검사 증명을 제출하십시오(4페이지 참조).
5. 판매세 완납 증명을 제출하십시오(4페이지 참조).
6. 신원 증명 제출(1 페이지의 “등록하기” 아래 6번 참조).
7. 차량 소유주가 등록자와 다른 경우, 소유주는 반드시 섹션 3의 차량 등록증/소유증 신청서를 완전히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양식 MV-82*). 소유주는 반드시 소유주의 성명 및 출생일에 대해 인정되는 증명 서류(1 페이지의 “등록하기” 아래 6번 참조) 및 해당 차량 소유권이 인정되는 증명 서류(3페이지 참조)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요금을 지불하십시오(1 페이지의 “등록하기” 아래 15번 참조).

등록증이 아닌 소유증만 신청하기

- 1973년 이후의 차량
- 1973년 이후의 트레일러로 공차중량이 1,000파운드 이상인 경우
- 1995년 이후 조립식 주택으로 운반 시 최소 폭이 8피트 또는 길이 40피트이거나, 부지에 정립 시 최소 320제곱피트인 경우

1. 완전히 작성한 소유증 신청서(양식 MV-82TON*) 또는 차량 등록증/소유증 신청서(양식 MV-82*)를 제출하십시오.
2. 소유권 증명을 제출하십시오(3페이지 참조).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동업 관계 또는 공동 소유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양식 MV-83T*).
3. 소유주의 신원 증명을 제출하십시오(1 페이지의 “등록하기” 아래 6번 참조).
4. 소유증이 회사 명의로 될 예정이라면 법인 증명을 제출하십시오(4페이지 참조).
5. 소유증이 동업 관계로 될 예정이라면 동업 관계 증명을 제출하십시오(4페이지 참조).
6. 판매세 완납 증명을 제출하십시오. 모든 차량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한 영수증(양식 FS-6T) 또는 뉴욕시 판매업체로부터의 소매 판매 증서(양식 MV-50)를 제출하십시오(4페이지 참조).
7. 차량이 2011년식 또는 그 이후의 모델이고 해당 차량이 제조된 해로부터 20년 이내에 양도되었을 경우 주행기록계 공개 설명서를 제공합니다(1 페이지의 “등록하기” 아래 11번 참조). 소유권 증명에 주행기록계 공개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소유주 및 판매자가 반드시 양식 MV-103*의 주행기록계 공개 설명서 섹션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8. 소유권 증명이 뉴욕주에 속하는 8년 이내의 차량은 손상 공개 설명서를 제출하십시오. 만약 소유권 증명에 손상 공개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소유주 및 판매자가 반드시 양식 MV-103*의 손상 공개 설명서 섹션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9. "차량 관리부 소장(Commissioner of Motor Vehicles)" 앞으로 지불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우편환을 제출합니다. 소유증 취득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트레일러, 선박 \$50
 - 조립식 주택 \$125
 소유증만 신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모든 DMV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하단의 “유의사항” 참조), 또는 본 섹션에서 명시한 서류를 아래 주소를 통해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신원, 회사, 동업 관계 증명의 복사본을 발송하십시오).

Title Bureau
NY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6 Empire State Plaza
Albany NY 12228

이 주소로 차량 등록 신청서를 보내지 마십시오

유의사항: 반드시 다음과 관련된 소유증 신청 시에만 소유증 담당국으로 우편을 보내십시오.

- 차량 수리업체의 선취특권
- 해난증명서
- 조립식 주택
- 보트
- 보세 차량
- 레몬법(Lemon Law)에 따라 구매자가 반품한 차량의 소유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

인정되는 증명 서류(원본 서류만 제출):

소유권 증명 아래 명시된 상황 중 귀하에게 해당하는 것이 없다면 dmv.ny.gov 또는 DMV 사무실에 방문하십시오.

1. 차량을 뉴욕주 판매업체로부터 구매했으며 그 차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a. **신차**- 소매 판매 증서(양식 MV-50) 또는 해당 판매업체가 발행한 뉴욕주 DMV 거래 영수증 및 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Manufacturer's Certificate of Origin)를 제출하십시오.
 - b. **중고**- 소매 판매 증서(양식 MV-50) 또는 해당 판매업체가 발행한 뉴욕주 DMV 거래 영수증 및 소유증 혹은 양도 가능한 등록증 중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2. 차량을 뉴욕주 이외 지역의 판매업체에서 구입하였으며 소유증이 선취득권자에게 있지 않은 경우
 - a. **신차** - 매도 증서 및 신규 소유주에게 이전된 원산지 증명서(Manufacturer's Certificate of Origin, MCO)를 제출하십시오. 해당 MCO에 이전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 각 이전 및 모든 재양도에 대한 MCO와 매도 증서를 제시하십시오.
 - b. **중고차** - 매도 증서 및 타주 소유증 또는 이전 가능한 등록증 및 모든 재양도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3. 차량을 뉴욕주 이외 지역의 판매업체에서 구입하였으며 소유증이 선취득권자에게 있는 경우
 - a. 소유주의 명의로 된, **선취득권자 또는 해당 타주 차량국에서 인증한** 소유증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인증은 반드시 동일한 페이지 또는 소유증 각서, 또는 차량국에서 발행한 소유권 초록에 표시되어야 하며, 차량 소유주의 명의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 b. 소유주의 이름 및 차량의 연식, 모델, 차대번호(VIN)가 포함된 선취득권자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은 반드시 선취득권자의 레터헤드에 적혀 있어야 하며, 선취득권자가 원 소유증을 가지고 있고, 소유증의 사본이 뉴욕 내 차량 등록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진술서는 어떤 조건에도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예: 선취득권자는 차량이 등록된 이후 통지해 줄 것을 DMV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중요: 귀하께서 타주 소유권 서류를 DMV에 제출하기 전까지 DMV에서는 양도 가능한 등록증 또는 소유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소유증 요청 및 선취득권자가 제공한 소유증 또는 소유권 서류, 귀하의 뉴욕주 등록증 사본을 아래 주소의 소유증 담당국으로 우편을 통해 보내주십시오. DMV에서 소유증 또는 양도 가능한 등록증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Title Bureau, NY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6 Empire State Plaza, Albany NY 12228

4. 차량을 뉴욕주 이외 지역의 리스 회사에서 임차하였으며 소유증이 리스 회사에 있는 경우
 - a. 리스 회사 명의로의 타주 소유증 **사본 및**
 - b. 해당 소유증의 사본이 뉴욕주 차량 등록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해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리스 회사의 서신 **및**
 - c. “차량 소유주가 등록자와 다른 경우” 섹션에 차량 소유주가 서명하였으며 완전히 작성한 차량 등록증/소유증 신청서(양식 MV-82*), 또는 차량 소유주가 귀하에게 차량을 뉴욕에서 등록할 수 있는 허가를 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 d. 또한 월간 리스 지불액 및 리스 기간을 나타내는 차량 리스 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유의사항: 리스 지불액 잔액의 판매세를 뉴욕주에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한 차량을 구입 시에는 리스 회사에서 반드시 귀하에게 소유증을 이전해야 합니다. 차량의 소유권을 귀하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 MV-82* 또는 MV-82TON*을 작성하고 적용되는 판매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 보장 증명

1. 등록자의 명의로 된 유효한 현재 뉴욕주 보험 ID 카드 또는
2. 임대 차량의 경우 양식 FH-1(보험 증서), 또는
3. 연방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또는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발행한 허가 또는
4. 자가보험 증서.

인정되는 증명 서류(계속)

보험 보장 증명

1. 뉴욕주 판매업체에서 구매한 차량은 **반드시** 판매 과정에서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검사 사실은 매매 증명서(양식 MV-50) 또는 전자 매매 증명서(양식 eMV-50)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2. 승객을 수송하는 차량에는 다음 사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NYS DOT 운영 인가(<https://www.dot.ny.gov/divisions/operating/osss/bus/passenger> 참조);
 - NYS DOT 점검(<https://www.dot.ny.gov/divisions/operating/osss/bus/inspection> 참조); 및/또는 다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19-A조 요건(<https://dmv.ny.gov/motor-carriers/information-and-forms-article-19> 참조)
3. 그 외의 모든 차량은 최초로 뉴욕주에 등록된 뒤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차량을 등록할 때 차량에 붙일 수 있는 10일 임시 점검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차량이 반드시 10일 이내에 점검을 통과해야 합니다.

개조 차량

1. 귀하의 차량 좌석 정원이 변경/확대된 경우 반드시 DMV 사무실에 모든 라벨 또는 번호판(대개 운전석 문에 있음) 사진 또는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차량에 변경 또는 확대를 거쳐 좌석 정원이 성인 기준 9명 이상(운전자 포함)인 경우, 반드시 원본 NYS DOT 점검 또는 NYS DOT 면제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판매세 완납 증명

1. 차량을 뉴욕주 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경우 판매 증서를 제출하십시오(양식 MV-50).
2. 차량을 뉴욕주 이외 지역의 판매업체 또는 사적인 개인, 회사를 통해 구입한 경우 양식 DTF-802**를 작성해 주십시오. 차량이 배우자, 부모, 자녀, 양부모, 의붓자녀가 아닌 자에게 선물한 것이거나 공정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경우 반드시 섹션 6도 작성해 주십시오. 섹션 6이 필수 요건이 아닌 경우 판매자가 서명한 매도 증서가 필요합니다. 트레일러가 공정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거나 선물인 경우, 모든 경우에 반드시 섹션 6을 작성하십시오.
3. 판매세 지불 면제를 신청하고 싶다면 양식 DTF-803**를 작성하십시오. 귀하는 면제 증명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판매세를 다른 주에서 지불했거나 그러한 지불의 공제가 허용된 경우 양식 DTF-804**를 작성하고 매도 증서를 제출하십시오. 미지불 금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양식 DTF-802**를 작성하십시오.

법인 증명

1. 법인에 등록된 차량 앞으로 발행된 뉴욕주 소유증, 등록증 또는 번호판을 제출하십시오. 또는
2. 법인 증명서의 증명필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또는
3. 뉴욕주 국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에서 발행한 봉인된 증명서 또는 접수증.
4. 법인 외의 사업체(예: LLP, LLC 등)의 경우 DMV 사무실에 문의해 인정되는 증명 서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동업 관계, DBA 또는 상호 사용의 증명

1. 동업 관계 - 카운티 서기관에게 제출한 동업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2. 상호(DBA)를 사용하는 개인 - 카운티 서기관이 발행한 DBA 접수증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3. 가칭을 사용하는 법인 -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법인과(Division of Corporations)에서 발행한 가칭 증명서의 증명필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위임장

사업체(즉 “본사”)에서 개인(“대리인”)에게 본사 소유의 차량을 구매, 매도,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본사에서 위임장에 서명한 날짜
2. 본사의 공증받은 서명, 이름, 주소(위임장을 승인하는 사업체)
3.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위임장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4. 해당하는 경우, 법인 또는 동업 관계의 이름 및 주소.

유의사항: 대리인(위임장을 받는 개인)은 반드시 모든 양식의 본인 서명 다음에 “P.A.”라고 적어야 합니다.

** DTF 판매세 양식은 뉴욕주 세무재정부에서 제공됩니다.